



제437회 국회(임시회)
제1차 법제사법위원회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법관의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 단체 결성 등 금지〉

■ 성일종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11561호)

2026. 7.

법 제 사 법 위 원 회

전문위원 최 기 도

목 차

I. 제안경위	1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. 검토의견	2
1. 법관의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 단체 결성 등 금지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성일중의원 등 11인
2. 제 안 일 : 2025. 7. 18.
3. 회 부 일 : 2025. 7. 21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관에 대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, 행정부의 공무원이 되는 일,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. 이는 민주적 정당성이 아닌 전문성에 기초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그 소속 법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.

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법원 내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닌 법관들의 사조직 활동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. 법관의 사조직 결성·가입·참여 등은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할 법원과 법관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책이 요구됨.

이에 현행법에 법관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의 결성, 가입,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원과 법관, 그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재고하려는 취지임(안 제49조제7호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1. 법관의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 단체 결성 등 금지

- 개정안은 법관의 재직 중 금지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원에 속하는 법관들을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를 창립·결성해 가입·참여·활동하거나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일(친목회·향우회·중친회·동창회 등 사교·친목단체, 운동·취미·여가 등을 위한 동호회를 제외)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49조 제7호).

현행	개정안
제49조(금지사항)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 1. ~ 6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9조(금지사항) ----- ----- 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서로 다른 법원[지원(支院) 및 시·군법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]에 속한 법관들을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를 창립·결성해 가입·참여·활동하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

7. (생략)	<u>일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단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<u>가. 친목회 · 향우회 · 종친회 · 동창회 등 사교 · 친목단체</u> <u>나. 운동 · 취미 · 여가 등을 위한 동호회</u> 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---------	---

- 현행법 제49조¹⁾에서는 법관의 재직 중 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(제1호), ②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(제2호), ③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(제3호), ④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(제4호), ⑤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(제5호), ⑥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기관 외의 법인·단체 등의 고문, 임원, 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(제6호), ⑦ 그 밖에 대법원규칙²⁾으로 정하는 일(제7호)을 금지하고 있음.

1) 「법원조직법」 제49조(금지사항)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1.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
2.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
3.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
4.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
5.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
6.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기관 외의 법인·단체 등의 고문, 임원, 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
7.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

이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영리 목적 겸업 금지 등을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 및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.

- 그런데 법원 조직 내부에서 법관들의 사적 조직 결성 및 활동을 통하여 특정 이념을 추구하거나, 외부 기관의 유착 등으로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³⁾.

이에 개정안은 법관들의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를 창립·결성해 가입·참여·활동하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일을 금지하려는 것으로, 개인적 연고나 인맥 또는 특정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재판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로 보임.

- 다만, 개정안의 이러한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의 점을 고려할 필요가

2) 「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」(대법원규칙 제1004호)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영리업무) 법 제49조제5호에 규정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상업·공업·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
2. 상업·공업·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·감사·업무를 집행하는 무한 책임사원·발기인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
3.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
4.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

제3조 (허가에 의한 관여) ①법관이 법 제49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직위에 취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 (국가기관의 직위 관여) 법관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 제50조에 규정된 파견근무 이외의 방식에 의한 관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1988. 3. 23.>

제5조 (관여종료의 보고) 법관이 이 규칙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여하던 업무로부터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3) ‘사조직이 법원 장악…사법부의 충격적인 현실’, 조선일보, 2021.5.5. 기사 참조

있음.

첫째, 「법관윤리강령」에서는 법관의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·문화 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 및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,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금지하고 있음⁴⁾.

둘째, 현행법 제49조제3호에서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금지하고, 「국가공무원법」에서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.

- 따라서 사적 조직이나 정치적 목적의 단체의 창립 및 활동 방지를 통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입법 취지와 현행법 및 관련 법령상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 및 정치적 활동 금지 규정 등을 두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

4) 「법관윤리강령」 제5조 (법관의 직무외 활동) ①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,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·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.
②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,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.
③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.
제7조 (정치적 중립) ①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.
②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,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.

필요가 있음.

-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에서 “사적 조직” 또는 “정치적 목적의 단체”라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, 법관에게 허용되는 학술 활동 참여 등 직무 외 활동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법관의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며,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.

문 의 처
02-6788-5071